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53호서식]

[ ] 어업허가증
[ ] 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일

신청인	성명(명칭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)	

신청내용	어업허가번호(어업신고번호)
	분실(훼손) 연월일 년 월 일
	분실 사유

「수산업법 시행규칙」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[ ] 어업허가증, [ ] 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・도지사
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(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조례에 따름
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 및 제출	➔	접수	➔	확인	➔	기안・결재	➔	재발급
신청인		시・도 시・군・구		시・도 시・군・구		시・도 시・군・구		시・도 시・군・구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